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협력업체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for Suppliers)

시행일 : 2025 년 12 월 01 일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주)동성화인텍

제·개정 이력

| 제·개정 번호 | 개정 페이지 및 내용 | 제·개정 일자 | 관리 부서 |
|---------|-------------|--------------|-------|
| 1 | 제정 | 2025. 12. 01 | 구매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목차

| | |
|-------------------|----|
| 제 1 장 개요 | 3 |
| 제 2 장 인권/노동 | 4 |
| 제 3 장 안전/보건 | 6 |
| 제 4 장 환경 | 7 |
| 제 5 장 윤리경영 | 9 |
| 제 6 장 경영시스템 | 11 |
| 부칙 | 12 |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제1장 개요

동성화인텍은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개선을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규범을 제정합니다.

제1조 (행동규범 목적)

2023 년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잠정적 합의, 국내 공급망 실사 법률안 발의 등의 이슈는 기업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저감하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은 공급망의 지속가능한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조 (행동규범 대상)

동성화인텍에 원자재 거래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구매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구매 협력사는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등 협력사의 전체 공급망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협력업체 책임과 역할)

동성화인텍의 구매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동성화인텍의 위탁을 받은 제 3 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은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만일 개선사항이 도출된다면 협력사는 이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추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동성화인텍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성화인텍 구매팀을 통해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제 2 장 인권/노동

제4조 (차별 금지)

-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조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노동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④ 협력사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류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⑤ 협력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원본 서류(여권, 근로허가증 등)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 ⑥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사업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⑦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 (근로시간 관리)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근무시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연장근무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7조 (인도적 대우)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인하여 차별대우, 보복조치, 괴롭힘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임직원이 근로조건, 경영방침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9조 (아동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0조 (강제노동 금지)

- ① 강요, 구속 또는 그 밖의 강제 노동 등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협력사는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상황, 채무관계 등에 기하여 정신적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업체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제 3 장 안전/보건

제11조 (법규 준수)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12조 (안전 진단)

- ① 협력사는 사업장의 안전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안정성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방호벽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13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① 협력사는 사업장의 책임자 직속의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그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즉각적 조치 사항, 대피 절차, 보고 체계, 후속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④ 협력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4조 (비상 상황 대응 체계 구축)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 (안전 교육)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안전 교육에는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16조 (보건 관리)

- ①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 4 장 환경

제17조 (환경경영 시스템)

- ①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 전반의 원자재 구매 고려 시 친환경 원자재 구매 및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18조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①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고효율 설비 및 전기 기구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19조 (수자원 관리)

- 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폐수처리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제20조 (대기오염물질 관리)

- ①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21조 (폐기물 관리)

-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확대,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자원 채취에서 제품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재료 및 구성 요소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 혹은 전 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실시하여 제품의 환경 부하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제 22 조 (화학물질 관리)

-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보관/사용/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23 조 (자원 효율성)

- ①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자원(용수 및 원자재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자원 자용을 감소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24 조 (생물다양성)

협력사는 사업지역 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의존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상쇄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5 장 윤리경영

제 25 조 (투명경영 및 반부패)

- ① 협력사의 모든 기업 활동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파트너사의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② 협력사의 경영활동, 재무 상태, 안전 관리 실태, 환경 보전 실태, 성과에 관한 정보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 ③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제 26 조 (이해상충 방지)

- ① 협력사는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 수단을 약속하거나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제안하거나, 허가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 27 조 (개인정보 보호)

- ①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 28 조 (불공정 거래방지)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협력사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29 조 (책임 있는 구매)

- ① 협력사는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공급받아서서는 안되며, 분쟁지역 채굴 및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제품·서비스를 공급받아서서는 안됩니다.
- ② 협력사는 공급받은 원자재의 생산 과정에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거래 업체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 30 조 (분쟁광물)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 ①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금, 탄탈륨 등의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③ 만일 협력사가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할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이 없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6 장 경영시스템

제 31 조 (지속가능한 경영의 표명)

- ①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행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 및 그 실행 계획에 관하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합니다.

제 32 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프로그램)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④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33 조 (공급망 실사)

| | | | | |
|------|------------|-----------|------|--------------|
| 분류번호 | A - 11 - 1 | 협력업체 행동규범 | 제정일자 | 2025. 12. 01 |
| 관리부서 | 구매팀 | | 개정일자 | - |

- ① 협력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완화 및 처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서 제시하고 있는 6 단계의 실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④ 책임경영 시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관리감독 시스템 속으로 포섭
- ⑤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실질적·잠재적 리스크)을 확인하고 평가
- ⑥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⑦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⑧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
- ⑨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제공될 때 이에 협조

부칙

제 1 조 (시행일)

- ① 본 지침은 2025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